내부회계관리제도운영보고서

금융위원회 귀중 2021년 03월 19일

회 사 명 : KC그린홀딩스(주)

대 표 이 사 : 이태영 (인)

본 점 소 재 지 : 서울시 마포구 상암산로 34(상암동) 디지털큐브 11층

(전 화) 02)-320-6114

내부회계관리자 : 김정완

(전 화) 02)320-6126

1.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내부회계관리규정과 이를 관리·운영하는 인력에 관한 사항

(1) 내부회계관리규정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8조 및 동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9조, 외부감사 및 회계 등에 관한 규정(이하 '외감규정'이라 한다) 제6조가 정하는 바에 따라 회사의 내부회계관리제도(이하 '내부회계관리제도')를 설계· 운영· 평가· 보고하는데 필요한 정책과 절차를 정하여 합리적이고 효과적인 내부회계관리제도를 설계· 운영함으로써 재무제표 신뢰성을 제고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① 내부회계관리제도에 관한 사항은 법령 또는 정관에 정하여진 것 이외에는 이 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② 연결재무제표에 관한 회계정보를 작성· 공시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에 관하여는 이 규정을 적용한다

제3조(용어의 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고 있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내부회계관리제도'라 함은 내부회계관리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회사의 재무제표가 일반적으로 인정되는 회계처리기준에 따라 작성· 공시 되었는지 여부에 대한 합리적 확신을 제공하기 위해 설계· 운영되는 내부통제제도로서, 이 규정과 이를 관리 운영하는 조직을 포함한 모든 조직 구성원들에 의해 지속적으로 실행되는 과정을 말한다.
2. '내부회계관리자'라 함은 법 제8조 제3항에 따라 내부회계관리제도의 관리 및 운영을 책임지는 자로서 대표이사에 의해 지정된 자를 말한다.
3. '내부회계관리제도 평가'라 함은 일정기간동안 내부회계관리제도의 설계와 운영이 효과적인지를 확인하는 절차로서 대표이사의 내부회계관리제도의 효과성 점검절차 및 감사(감사위원회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내부회계관리제도 운영실태 평가절차를 포함한다.

4. '감사인'이라 함은 법 제2조 제7호 가목에 따른 회계법인을 말한다.

2장 회계정보의 관리

제4조(회계처리의 일반원칙)

① 회계정보의 식별, 측정, 분류, 기록 및 보고 등 회계정보처리에 관하여는 기업회계기준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② 제1항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일반적으로 공정타당하다고 인정되는 회계관습에 따른다.

제5조(회계정보의 기록. 보고) 회계정보는 제4조의 회계처리의 일반원칙에 따라 식별, 측정, 분류, 기록 및 보고하되 다음 각호의 절차를 준수하여야 한다.

① 회계정보는 이를 화폐액으로 측정하여 자산, 부채, 자본, 수익, 비용 등으로 분류하여 기록하여야 한다.

② 회계정보는 전산시스템을 이용하여 기록하고 전산장부에 기록된 회계기록은 내부 규정에서 정한 보유기한까지 보존하여야 한다.

③ 회계기록의 대외 공시를 담당하는 부서에서는 내부회계관리제도에 의하여 작성된 재무제표를 내부회계관리자에게 정기적으로 보고하여야 한다.

제6조(회계기록의 요건) 회계처리의 일반원칙에 따라 기록된 회계기록은 다음 각호의 요건을 충족하여야 한다.

① 모든 거래는 사실로 발생하여 실제 존재하여야 한다.

② 모든 거래는 빠짐없이 기록되어야 한다.

③ 모든 거래기록은 정확하게 계산되어야 한다.

④ 모든 거래는 적시에 기록되어 기간귀속이 적정하여야 한다.

⑤ 재무제표항목은 제4조의 회계처리의 일반원칙에 따라 타당하게 평가되어야 한다.

제7조(회계기록의 오류통제, 내부검증 및 오류의 수정)

① 작성 및 공시된 회계기록이 제6조의 요건을 충족하기 위하여 각 부점의 회계담당자들은 내부규정 및 업무매뉴얼에 따라 회계정보에 대한 정기적인 점검을 실시하여 오류발생을 통제하여야하며, 필요시에는 회계정보의 적정성에 대한 내부검증을 실시하여야 한다.

② 회계담당자들의 업무수행결과 발견된 회계기록의 오류는 직무전결규정 등에 정하여진 전결권자의 승인을 받아 제4조에 규정한 회계처리의 일반원칙에 부합하도록 수정되어야 한다.

제8조(회계장부의 관리)
① 회계장부는 반드시 전산시스템에 의하여 일관 관리. 운영되어야 한다.
② 회계장부의 위조, 변조 및 훼손을 방지하기 위해 전산시스템에 의한 전산장부를 수정할 경우 수정자 및 수정시간 등에 대한 기록을 보관하여야 한다.
③ 회계장부의 수정은 제4조에 규정한 회계처리의 일반원칙에 의한 오류를 수정하는 경우에 한한다.

제9조(내부회계관리규정 위반 지시등)
① 대표이사를 포함한 임.직원 등이 이 규정을 위반하여 회계정보를 작성. 공시를 지시하는 경우 당해 임.직원은 이를 내부회계관리자에게 즉시 보고하여야 한다.
② 내부회계관리자는 제1항의 보고내용이 불충분하거나 사실 확인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관련부서를 점검하여 시정, 제재 등의 조치를 할 수 있다.
③ 제1항의 경우 내부회계관리자가 관련되어 있거나 정식절차를 밟아 보고하는 것이 부적당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감사(감사위원회) 또는 감사인(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관한법률 제3조의 감사인을 말한다)에게 이를 고지하여야 한다.

제3장 조직 및 운영 제10조(각 조직의 역할과 책임)
① 대표이사는 내부회계관리제도의 관리 및 운영을 책임지며 내부회계관리제도의 구축 및 운영에 필요한 제반사항의 지원과 함께 적절한 내부회계관리정책을 수립하여야하고, 상근하는 이사 중 회계를 관리할 능력이 있는 자 1인을 내부회계관리자로 지정하여야 한다.

② 내부회계관리자는 내부회계관리제도의 정비와 운영을 총괄하고 다음 각호의 내부회계관리업무를 수행하며 이사회 또는 감사(감사위원회)가 내부회계관리제도의 운영실태를 평가하는 등의 직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자료 제출을 요구하는 경우에는 이에 성실히 응하여야 한다.

1. 매 기말마다 이사회 및 감사(감사위원회)에게 이 규정에 따른 회계관리제도의 운영실태에 관한 보고

2. 회계기록이 산출되는 부서에 대한 정기적인 내부회계관리 운영실태에 대한 점검

③ 내부회계관리자는 회계관련 조직의 업무 등을 감안하여 부서별로 관리.운영의 책임자를 지정할 수 있으며, 부서별 관리.운영책임자는 이 규정에 의한 관리. 운영에 관한 실무적인 책임을 진다.
④ 감사(감사위원회)는 제2항에 의해 내부회계관리자가 보고하는 내부회계관리제도의 운영실태를 평가하여 이사회에 보고하고 이를 본점에 비치하여야 한다. 이 경우 내부회계관리제도의 관리 및 운영에 대하여 시정 의견이 있는 경우에는 이를 포함하여 보고.비치하여야 한다.

보칙
제11조(규정의 제.개정 및 세부사항)
① 이 규정의 제정 및 개정은 이사회결의에 의한다.
② 이 규정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한 세부적인 사항은 이사회의 위임을 받아 대표이사가 정한다.

제12조(벌칙)
① 이 규정을 위반한 임직원의 징계에 관하여는 인사규정 등 관련규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부 칙 이 규정은 2001년 11월 30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규정은 2004년 4월 1일부터 시행

(2) 당해 사업연도중 내부회계관리규정의 주요 개선내용

개선일자	개선전	개선후	비고(개선이유등)
-	-	-	-

(3) 관리・운영조직의 책임자 현황

소속기관 또는 부서	책임자 성명	직 책	담당업무		전화번호
			내부회계관리제도 관련	기타	
감사(위원회)	권행민	감사	내부회계관리제도의 운영실태를 평가하여 이사회에 보고하며 관리및 운영에 대한 시정의견제시	-	02)320-6150
이사회	김정완	내부회계 관리자	내부회계운영총괄	-	02)320-6160
회계처리부서	이유식	팀장	회계, 세무 업무 등	-	02)320-6126
전산운영부서	이화영	팀장	회계관련 전산프로그램 관리	-	02)320-6300
자금운영부서	이유식	팀장	자금 입출입 관리, 자금수지 계획 및 관리, 공시 등	-	02)320-6126
기타관련부서	-	-		-	

(4) 내부회계관리・운영조직 인력 및 공인회계사 보유현황

소속기관 또는 부서	총 원	내부회계담당 인력의 공인회계사 자격증 보유비율			내부회계담당 인력의 평균경력월수*
		내부회계 담당인력수 (A)	공인회계사 자격증 소지자수(B)	비율 (B/A× 100)	
감사(위원회)	1	1	-	-	10
이사회	6	1	1	100	94
회계처리부서	4	4	-	-	102
전산운영부서	2	2	-	-	31
자금운영부서	4	4	-	-	102
기타관련부서	-	-	-	-	-

* 내부회계담당인력의 평균경력월수 = A의 단순합산 내부회계관리업무경력월수(입사전 포함) / 내부회계담당인력수(A)

(5) 회계담당자의 경력 및 교육실적

직책 (직위)	성명	전화 번호	회계담당자 등록여부	경력		교육실적	
				근무 연수	회계관련 경력	당기	누적
내부회계 관리자	김정완	02)320 -6160	O	13	13	-	-
회계담당팀장	이유식	02)320 -6126	O	1	1	16	16
회계담당직원	최윤지	02)320 -6148	O	1	1	-	-

2.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8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대표자가 보고한 내부회계관리제도 운영실태보고서

보고일자	보고자	보고내용	보고대상	비 고
2021.02.05	이태영 김정완	첨부참조	주주, 이사회 및 감사	-

대표이사 및 내부회계관리자의 운영실태 평가보고서

KC그린홀딩스(주) 이사회 및 감사(위원회) 귀중

본 대표이사 및 내부회계관리자는 2020년12월31일 현재 동일자로 종료하는 회계연도에 대한 당사의 내부회계관리제도의 설계 및 운영실태를 평가하였습니다. 내부회계관리제도의 설계 및 운영에 대한 책임은 본 대표이사 및 내부회계관리자를 포함한 회사의 경영진에 있습니다.

본 대표이사 및 내부회계관리자는 회사의 내부회계관리제도가 신뢰할 수 있는 재무제표의 작성 및 공시를 위하여 재무제표의 왜곡을 초래할 수 있는 오류나 부정행위를 예방하고 적발할 수 있도록 효과적으로 설계 및 운영되고 있는지의 여부에 대하여 평가하였습니다. 본 대표이사 및 내부회계관리자는 내부회계관리제도의 설계 및 운영실태를 평가함에 있어 내부회계관리제도 모범규준 제5장을 평가기준으로 사용하였습니다.

본 대표이사 및 내부회계관리자의 내부회계관리제도 운영실태 평가결과, 2020년 12월31일 현재 당사의 내부회계관리제도는 내부회계관리제도 모범규준에 근거하여 볼 때, 중요성의 관점에서 효과적으로 설계되어 운영되고 있다고 판단됩니다.

본 대표이사 및 내부회계관리자는 보고내용이 거짓으로 기재되거나 표시되지 아니하였고, 기재하거나 표시하여야 할 사항을 빠뜨리고 있지 아니함을 확인하였습니다. 또한 본 대표이사 및 내부회계관리자는 보고 내용에 중대한 오해를 일으키는 내용이 기재되거나 표시되지 아니하였다는 사실을 확인하였으며, 충분한 주의를 다하여 보고 내용의 기재사항을 직접 확인 검토하였습니다.

2021년 02월 05일

내부회계관리자: 김정완 서명完

대 표 이 사: 이태영 서명完

대표이사 및 내부회계관리자의 운영실태 평가보고서_1

3.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8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감사가 내부회계관리제도의 운영실태를 평가하여 이사회에 보고한 내용

보고일자	보고자	보고내용	비 고
2021.02.19	권행민	첨부참조	-

감 사 의 평 가 보 고 서

KC그린홀딩스 주식회사 주주 및 이사회 귀중

본 감사는 2020년 12월 31일 현재 동일 자로 종료하는 회계연도에 대한 당사의 내부회계 관리제도의 설계 및 운영실태를 평가하였습니다. 내부회계관리제도의 설계 및 운영에 대한 책임은 대표이사 및 내부회계관리자를 포함한 회사의 경영진에 있습니다.

본 감사는 대표이사 및 내부회계관리자가 본 감사에게 제출한 내부회계관리제도 운영실태 보고서를 참고로, 회사의 내부회계관리제도가 신뢰할 수 있는 재무제표의 작성 및 공시를 위하여 재무제표의 왜곡을 초래할 수 있는 오류나 부정행위를 예방하고 적발할 수 있도록 효과적으로 설계 및 운영되고 있는지의 여부에 대하여 평가하였으며, 내부회계관리제도가 신뢰성 있는 회계정보의 작성 및 공시에 실질적으로 기여하는지를 평가하였습니다. 또한 본 감사는 내부회계관리제도 운영실태보고서에 거짓으로 기재되거나 표시된 사항이 있거나, 기재하거나 표시하여야 할 사항을 빠뜨리고 있는지를 점검하였으며, 내부회계관리제도 운영실태보고서의 시정 계획이 회사의 내부회계관리제도 개선에 실질적으로 기여할 수 있는지를 검토하였습니다.

본 감사는 내부회계관리제도의 설계 및 운영실태를 평가함에 있어 내부회계관리제도 모범규준 제5장을 평가기준으로 사용하였습니다.

본 감사의 내부회계관리제도 운영실태 평가 결과, 2020년 12월 31일 현재 당사의 내부회계 관리제도는 내부회계관리제도 모범규준에 근거하여 볼 때, 중요성의 관점에서 중요한 취약점이 발견되지 아니하였습니다.

2021년 02월 19일

감 사 권 형 [illegible]

4.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제8조제6항에 따른 감사인의 검토의견 또는 감사의견

(감사인명 : 예교지성회계법인)

구 분	의견내용	회사의 개선여부	개선계획	비 고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8조 제6항의 종합의견	"경영진의 운영실태보고 내용이 중요성의 관점에서 내부회계관리제도 모범규준의 규정에 따라 작성되지 않았다고 판단하게 하는 점이 발견되지 아니하였습니다	-	-	-
기타 내부회계 제도관련 의견				

독립된 감사인의 내부회계관리제도 검토보고서

케이씨그린홀딩스주식회사

대표이사 귀하

우리는 첨부된 케이씨그린홀딩스주식회사의 2020년 12월 31일 현재의 내부회계관리제도의 운영실태평가보고서에 대하여 검토를 실시하였습니다. 내부회계관리제도를 설계,운영하고 그에 대한 운영실태평가보고서를 작성할 책임은 케이씨그린홀딩스주식회사 경영자에게 있으며, 우리의 책임은 동 보고내용에 대하여 검토를 실시하고 검토결과를 보고하는데 있습니다. 회사의 경영자는 첨부된 내부회계관리제도 운영실태평가보고서에서 "2020년 12월 31일 현재 내부회계관리제도 운영실태 평가결과, 2020년 12월31일 현재 당사의 내부회계관리제도는 내부회계관리제도 모범규준에 근거하여 볼때, 중요성의 관점에서 효과적으로 설계되어 운영되고 있다고 판단된다"고 기술하고있습니다.

우리는 내부회계관리제도 검토기준에 따라 검토를 실시하였습니다. 이 기준은 우리가 중요성의 관점에서 경영자가 제시한 내부회계관리제도의 운영실태평가보고서에 대하여 회계감사보다는 낮은 수준의 확신을 얻을 수 있도록 검토절차를 계획하고 실시할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검토는 회사의 내부회계관리제도를 이해하고 경영자의 내부회계관리제도의 운영실태보고내용에 대한 질문 및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제한적 범위 내에서 관련 문서의 확인 등의 절차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회사의 내부회계관리제도는 신뢰할 수 있는 회계정보의 작성 및 공시를 위하여 한국채택국제회계처리기준에 따라 작성한 재무제표의 신뢰성에 대한 합리적인 확신을 줄 수 있도록 제정한 내부회계관리규정과 이를 관리· 운영하는 조직을 의미합니다. 그러나 내부회계관리제도는 내부회계관리제도의 본질적인 한계로 인하여 재무제표에 대한 중요한 왜곡표시를 적발하거나 예방하지 못할 수 있습니다. 또한, 내부회계관리제도의 운영실태보고 내용을 기초로 미래기간의 내용을 추정시에는 상황의 변화 혹은 절차나 정책이 준수되지 않음으로써 내부회계관리제도가 부적절하게 되어 미래기간에 대한 평가 및 추정내용이 달라질 위험에 처할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하여야 합

내부회계 검토보고서_예교지성회계법인_page1

니다.

경영자의 내부회계관리제도 운영실태평가보고서에 대한 우리의 검토결과, 상기 경영자의 운영실태보고 내용이 중요성의 관점에서 내부회계관리제도 모범규준의 규정에 따라 작성되지 않았다고 판단하게 하는 점이 발견되지 아니하였습니다.

우리의 검토는 2020년 12월 31일 현재의 내부회계관리제도를 대상으로 하였으며, 2020년 12월 31일 이후의 내부회계관리제도는 검토하지 않았습니다. 본 검토보고서는 주식회사의외부감사에관한법률에 근거하여 작성된 것으로서 기타 다른 목적이나 다른 이용자를 위하여는 적절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서울특별시 강남구 강남대로 334(역삼동, 에셈타워 9층)

예교지성회계법인 대표이사 이의웅

2021년 3월 19일